

저작권에 기반한 도서관 정보봉사의 확대방안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 영 준

서 론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론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경험의 기록과 이를 통한 지식의 전달이 인간중심의 문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식 관리의 중심에는 이를 통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인류가 생산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원하여 인류발전과 문화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편, 인류의 지식은 문헌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삼자에게 전달되고, 도서관은 이 매체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전파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공익적인 성질 때문에 지식생산자들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사와 대출과 같은 봉사에 대해 공정사용이라는 취지에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터넷의 출현은 정보의 공개성과 평등성, 부도덕성, 즉시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이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대형 도서관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을 물리적으로 방문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만 입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관련 자료의 검색과 해당 자료의 소장정보를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관 정보봉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열람업무는 도서관봉사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열람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도서관들은 자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일

정한 도서관간 규약에 따라 상호대차와 같이 자료의 교환이라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해 각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까지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상호대차의 제공방법은 이용자들의 직접 방문 후 수령이나 우편과 같은 전달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기존의 도서관 정보봉사에 대한 개념과 방법 등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자료 형태가 전자화됨에 따라 복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봉사와 자료의 전자화 등은 지적 저작권 적용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작권의 관점이 도서관에 적용되었던 면책의 개념과 보호의 개념에서 저작권자의 보호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서관 정보봉사의 축소를 초래하였으며 도서관 입지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이라는 양면적인 관점을 조사하고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 하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봉사 유형에 대해 국내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적인 대처방안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권고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해석을 사례중심으로 조사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봉사에 대한 법적인 판결이나 판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수준의 법적인 해석보다는 기술적 해석과 제도권 내에서의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

도서관의 변화

1) 도서관의 정의

도서관에 대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장 2조에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도서관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을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이라고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칭하고, 두 번째는 복제행위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서관들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관들을 의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의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는 조항에 대한 후자의 단서조항이다. 영리라 함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갈등부분은 병원도서관, 기업체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의 주체가 영리기관일 경우이다. 왜냐하면,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봉사의 범위와 종류가 비영리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도서관의 봉사유형

도서관의 비영리성과 봉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하부시스템은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1) 일반경영 (2) 수서 (3) 정리 (4) 대출 (5) 참고봉사 (6) 정기간행물

이상의 하부시스템은 각각의 별개의 독립적 업무로 운영되기보다는 상호간 밀접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업무들은 참고봉사라는 대원칙을 수용하기 위해 각각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대부분 인쇄형태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기존의 모든 처리과정이 물

리적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참고봉사업무도 예외는 아니어서 물리적 자료의 제공 혹은 물리적 자료에 기반한 질문처리가 일반적 형태의 봉사였다. 수서의 경우에는 구애라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형태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는 처리과정을 거쳤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위한 업무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서 및 정리

이용자의 자료신청과 같은 최소한의 선정원칙을 설정하여 정해진 예산과 기준 내에서 구입, 수증, 교환이 이루어져 재산개념의 장서를 구축한다.

(2) 대출

기본적으로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소속 이용자들에게 물리적 자료에 기반한 열람 및 대출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능동적인 도서관의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포함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장서접근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참고봉사

기본적으로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기반한 즉답형 질문처리, 참고문헌조사를 제공한다. 비소장 자료에 관한 참고봉사는 주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4) 정기간행물

기본적으로 구독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기반으로 내용검색이나 목차서비스, 복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능동적 도서관에서는 회원도서관간의 상호대차 및 복사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기존 도서관은 자료의 입수과정에서 적정한 대가(금전적 대가 등)를 지불하고 물리적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었다. 또한 열람 및 대출, 참고봉사과정에서도 각 도서관 인력들이 투입되어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자료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봉사가 도서관의 전형적인 봉사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 도서관

세기말부터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매순간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매우 역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출현하였다. 인터넷의 출현은 기존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사명감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필요로 하게 하였다. 특히, 자료의 수서와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는 디지털데이터의 공개성과 전파성, 무기명성으로 인해 다른 업무에 비해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관이 소장한 단행본, 잡지 등 모든 문헌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가상공간에 업로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에 접근함으로써 기존 도서관에 열람시간제한이나 공간 부족과 같은 시공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존 도서관 전산화는 소장자료의 서지정보 기계가독화(KORMARC)를 의미하고, 도서관간 서지정보의 통합으로 완전한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한편, 디지털도서관은 서지정보의 완성에서 본문정보의 완성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한 서지정보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자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본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경우 이루어지는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표 1).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 업무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서비스 시간과 정보제공형태의 변화이다. 기존의 장서는 대부분 모든 도서관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한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개념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열람도 도서관에 출입이 허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복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의 제한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구축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열람과 복사 등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나 장기간 열

람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즉, 정보검색 행위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사서와 같은 정보증개자의 도움 없이 직접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불법복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식을 기대할 뿐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웹문서들은 무료로 열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권의 소재와 범위 등도 상대적으로 매우 애매하여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나 해석없이 이용제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디지털 도서관과 같이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 개설된 경우와 인터넷의 웹 검색엔진을 활용한 무분별한 검색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면책

1)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이를 장려하는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과 같은 학문기관에 대한 업무틀 높이 평가하고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비영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디지털 도서관의 특성

영역	전통적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 소장공간	· 제한·특정공간	· 공개·공유공간
· 정보제공형태	· 서지자료중심	· 전문중심
· 서비스시간	· 시간공간의존	· 시간공간 제약없음
· 정보처리형태	· 수작업정보처리	· 자동적 정보처리
· 자료의 양	· 소장자료중심	· 무한
· 시스템특성	· Centralized system	· Client/server system
· 소장자료	· 인쇄매체-Text중심	· 전자매체-Multimediar
· 정보검색	· 사서대행중심의 검색	· 이용자 직접검색
· 기타	· Standards-minor issue	· 국제 표준화 전제

(1) 도서관의 예산

지적 재산권은 대부분 해당 저작물이 갖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은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도서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 예산은 인건비와 자료 구입비로 구별이 되며 최근 예산항목에 있어 지적 재산권이나 혹은 저작권에 연관된 예산은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책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의 도서관들은 자료구입과 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저작권보상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도서관은 정보 봉사과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이용에 대해 무료화하도록 천명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모든 도서관 봉사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2) 도서관의 공정사용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가운데 유료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서비스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의 서비스는 무료라는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열람 및 대출행위는 무료가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들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도서관은 대표적인 공익단체로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관이기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한 지적 욕구를 무료로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공익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따르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문화행위이거나 혹은 교육지원 행위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이 완전하게 배제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은 무료'라는 사회적 공감대

에 기인하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열람 및 복제 등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 법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다.

2) 각국의 면책범위

(1) 국내의 면책범위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이용을 다음과 같이 공정이용으로 규정하여 복제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¹⁾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타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미국의 면책범위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논평·시사·보도·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의 제작 또는 기타 제10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

즉, 미국에서도 저작권법은 비평·논평·시사보도·교수·학문 또는 연구를 예시하나, 그 밖의 사용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도서관, 회사, 대학 등이 사진 자료 등에 관한 복사를 허용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어 도서관과 같은 단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 침해 유무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도서관 등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 판단된다.

(3) 일본의 면책범위

일본은 저작권법 제5관(제30조~제50조)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인용, 교과용 도서 등에서의 게재,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고정,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 공개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미술저작물의 전시에 따른 복제, 번역·번안 등에 의한 이용,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이다. 그 밖에도 출처명시 및 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면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저작권법조항은 국내의 것과 매우 유사하나, 디지털 녹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 즉, 제30조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서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서 일본법령에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에 제공되는 기록매체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액의 보상금을 저작권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성능을 보유한 녹화기기로의 복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많은 도서관에서는 멀티미디어실을 운영하고 디지털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의 법적 시각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3) 면책범위의 분석

국내외를 포함하여 각국 도서관의 복제 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유연한 적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행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위는 공정이용범주 내에 있다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보고를 면제하여 자유로운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 특히, 허락의 조건을 도서관 소장용과 연구용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제행위에 대해 무제한적인 허락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관점으로 도서관의 복제행위에 대해 베른협약에서는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우리 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협약 제9조 2항의 도서관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등을 허용한다는 일반적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8조에 도서관에 대한 면책조건을 제시하여 공정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서관에서 복사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도서관내에서 보상청구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능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은 도서관 공정이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서관이 산출된 지적 산물을 공유하여 인류공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요기관이라는 것을 전인류가 목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공대권

도서관 소장자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재화가 투자되어 입수된 자료이며, 자료의 대출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책의 대출이 지속

될 경우에 해당 자료의 손상과 재구입 과정이 수반된다. 즉, 대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2) 복제권

도서관 소장자료의 복사와 같은 복제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복제행위자와 저작권자와의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개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자료의 복사는 복사한 자의 구체적 행위이며 대부분의 도서관은 해당 자료의 복사행위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저촉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제를 연구와 같은 공정이용범주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명과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지적은 저작권자와 복제행위자 사이에서 당사자간의 문제로 처리될 것이다.

(3) 시장성

도서관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료 구입비에 대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도서관들이 문헌형태로 출간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최대의 고객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 복제에 관한 적극적인 제약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의 배포

1) 디지털 자료의 종류 및 특성

디지털 저작물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자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컴퓨터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는 자료와 컴퓨터 내에서는 물론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여 다루는 것으로도 구분하기도 하나²⁾ 도서관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들은 후자의 경우이다. 즉, 문서와 같이 사람들이 문자와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다운로드 후 크게 수정이 가능한 자료와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가 후자의 경우보다 저작권의 침해요소가 많다.

(1) 수정이 가능한 자료

웹문서 가운데 수정이 가능한 자료라 함은 HTML과 같은 메타언어에 의거하여 구조화된 자료들을 의미한다. 지금의 웹문서들은 HTML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도 이의 변환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용이함에 근거하여 단순히 훑어보는(browsing) 행위 내지는 검색하는 행위도 복제의 범주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³⁾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복제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불법복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인쇄 저작물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를 위해 입력작업과 같은 최소한의 작업이 필요하였으나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저작권 침해에서는 입력과정과 같은 최소한의 수고과정없이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규모도 커지게 된다. 최근의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 3년 내외로 제공하였던 학위논문의 전문 서비스가 이러한 불법복제 사례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선량한 이용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수정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련의 워드프로세서로 가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 최소한의 편집과정으로 복제가 용이하다.
- 최소한의 편집과정으로 복제의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웹상에서 입수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 가운데 hwp와 같은 워드프로세서 파일과 html 파일 등이 상대적으로 수정이 용이한 디지털 자료이다.

(2) 수정이 어려운 자료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의 복제 행위에 대해 관대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12. pp.199~200.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12. pp.97~100.

하였던 이유 가운데 복제의 수준이 원본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을 때 이의 권한범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웹상에서 수정이 어려운 자료들은 대부분 사진형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의 불법복제와 사용에 대해 권한범위가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디지털 데이터들은 수정이 어려운 사진파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명도의 조절로 복제물의 질을 조정할 수 있어 책자형 저작물의 복사물 선명도와 같이 원본과 차이를 둘 수 있어 복제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하다. 수정이 어려운 디지털 자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제 후 해당 자료에 대한 편집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 사진파일로 데이터파일이 구조화되었을 경우에는 본문검색과 같은 자연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각 파일에 대한 별도의 색인어를 부여해야 한다.

- 일정한 문서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차지하는 기억공간이 수정이 용이한 데이터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한다.

- 이러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Acrobat과 같은 별도의 뷰어가 있어야 하며, 파일의 형태는 대부분 JPG와 JIF, PDF 등과 같은 사진파일로서 해상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파일의 크기가 작은 파일이다.

(3) 디지털 자료의 특성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료는 기존의 책자형 자료의 복제보다 복제과정에 소요되는 수고와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발생요인이 매우 높다. 특히, 복제물과 원본의 해상도 차이와 내용의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함께 CD-ROM과 같은 하나의 매체에 쉽게 융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저작물의 범주와 이러한 범주에 따른 권리 및 이 권리를 제한하는 구분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고속의 대용량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어느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단지 몇 번의 자판 조작

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완전한 복제물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단지 한번 게시판에 올려지는 것도 그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디지털 자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제에 따른 원본자료의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복제품과 원본자료와의 형태와 질의 차이가 전혀 없다.

- 복제비용이 기존의 책자형 저작물의 복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 복제 행위에 대한 추적이 매우 어려우며 가공시에 대한 추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편집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2차 저작물 제작도 용이하다.

-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2) 디지털 자료의 구축방안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은 기존의 책자형 자료의 제공에서 전자자료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작권은 1차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1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1차적 저작물에 비해 2차적 저작물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얻어도 1차 저작자의 허락을 얻도록 함으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한편, 인쇄저작물에 있어 소설을 포함한 일반 교재의 경우는 저작자의 인세가 대부분 10~20%가 일반적이다. 나머지 80~90%의 비용은 출판사나 출판자가 인쇄나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익으로 산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관례에 비추어 인쇄저작물에 있어 저작자의 권리는 2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80%는 인쇄 및 조판, 홍보,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사의 권리는 80%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는 원자료의 내용을 인터넷과 같은 통신선상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메타언어로 다시금 재가공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인쇄형태의 자료를 재입력하여 재생화면에 적절하도록 편집을 새로이 하고, 이를 통신선상에 올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디지털 도서관이 일반 저작물 생산과정에서 출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공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기계를 이용한 입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재가공된 디지털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 되지만 이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의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의 권리를 정리할 수 있다.

(1) 수작업 입력

디지털화 방법 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정확한 입력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키인(key-in)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방식명대로 디지털화 대상으로 선정된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자료 입력비와 입력자료 검수비로 구분된다. 현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가운데 입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평균임금이 약 26,000원 내외(8시간 근무)로 간주할 경우 한권 입력에 일수로는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경비로는 65,000원이 소요된다.

(2) 기계를 통한 입력

인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그 방안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스캐너와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스캐너와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효율에 따라 생성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대략적인 기계활용을 이용한 디지털화 방법은 최소한의 수작업방식이 필요하며, 자료의 선택, 스캐닝, 문자인식, 결과편집, 데이터가공(메타언어), 구축자료검수(피드백) 등 대략 6개 단계를 거친다. 이 가

운데 최소한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의 선정과 더불어 데이터가공, 구축자료 검수이다. 또한 스캐너의 종류에 따라 스캐닝과정에 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① 단면 플랫폼베드형 스캐너 활용; 기존은 스캐너 입력은 대부분 단면 플랫폼베드형을 사용하였다. 플랫폼베드형은 저렴한 구입비용이 큰 장점이나, 이 형태의 스캐너는 사진이나 적은 양의 문서용으로 개발되어 책자와 같이 제본이 되어 있는 저작물의 입력에는 적합치 않다.

② 양면 스캐너를 활용할 경우; 현재 국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양면 스캐너는 1분에 약 200매(200 dpi 수준)를 스캐닝하며, 최신 기종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160권 이상을 인식할 수 있다. 양면스캐너를 이용한 일반적인 사양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스캐닝 범위: 8.5×14인치, A4용지
- 분당 스캐닝 속도: 분당 130페이지 (양면)
- 인식 수준: 200 dpi

이 방식의 최대 단점으로는 양면 스캐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책등(書背: book spine)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책이 파손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양면 스캐너의 가격은 플랫폼베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높다는 점이다. 문자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플랫폼베드로 구축된 파일과 동일하다.

저작권 제도내의 도서관 봉사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제도내에서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정확한 이해와 저촉될 수 있는 도서관 봉사업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서관 봉사가 저작권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는 대부분이나 특히 열람과 대출, 복사에 대한 업무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 열람의 제한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을 위해서는 특수도서관과 같이 이용에 제한이 있는 기관과 공공도서관과 같이 이용에 제한이 없는 모든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웹상에서 국가기관

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의 사전등록과정이 생략되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디지털 자료의 열람과 다운로드를 허락하고 있다. 대학도서관과 같이 디지털 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먼저 구축한 선진기관에서도 서지정보 수준의 자료검색에서는 이용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열람과 검색을 허락하고 있다. 향후 각 기관별로 전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확대하여 도서관 봉사를 공격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현재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이나 학회지, 기관지, 정기간행물 등을 자관의 사이트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결론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원문데이터의 열람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출(다운로드 등)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자료형태의 대출은 영원히 회수되지 않는 대출이다. 누군가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계적 허용치 내에서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에서 책자형 자료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디지털 저작물의 공개는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1) 상호대차

상호대차는 도서관간의 상호규약으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협력도서관에 대출하여주고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협력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자료를 빌려오으로써 장서구입의 예산과 이를 보관하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상호대차의 수준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소모품보다는 기관의 재산으로 지정되어 이의 관외대출을 수용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특히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상대 협력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복사를 하여 복사본을 제공하는 복사물상호대차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

적인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소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 도서관의 종합소장 목록의 발간이 필요하다. 인터넷기반의 디지털 도서관의 출현으로 인해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지정보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원문제공서비스도 도서관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호대차규약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학도서관협의회**; 1968년 6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로 발족하여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친목을 비롯하여 회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회원도서관의 상호대차 및 자료보충의 협력, 회원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회 및 강습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원도서관의 상호대차 및 자료보충의 협력’은 타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회원교들이 Ariel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⁴⁾ 외⁵⁾ 타협의체와의 원문복사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기관과의 원문복사 서비스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복사료와 항공료 이외에 반드시 저작권료가 해외원문서비스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 기관에서 타도서관간의 복사서비스는 저작권집중관리를 자발적이든 혹은 타의적이든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예이다.

②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cientific & Techn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 STIMA)는 전국의 과학기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정보관리부서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기관 간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업무협조, 정보교환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관리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2년 6개 기관에서 출범하여 2000년 현재 53개 기관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문헌정보학 연구사업과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등이다. 원문복사와 상호대차는 철저하게 회원기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STIMA는 회칙에 저작권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원도서

4) 국내협약기관: KAIST, 포항공대,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협정기관,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5) BLDSC 서비스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 UMI (University Microfilm Institute) 서비스

관에서 제공하는 복사신청서 등에도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다.

③ 기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같이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FirstSearch와 같은 정보제공회사를 통한 외국과의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rstSearch는 미국 OCLC의 데이터베이스로 별도의 훈련이나 Online 검색 경험 없이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Online 검색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Online Reference System이다.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WorldCat으로 3천 2백만 이상의 목록레코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며 FirstSearch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제, 키워드, Phrase, Boolean 검색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이용자는 전 세계의 20,000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음성자료, 영상자료, 악보, 지도, 문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위치도 알 수 있다.

④ 상호대차에 대한 해석; 도서관이 협약에 의해 타도서관으로 관외대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장도서들이 모두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과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대책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도서관의 입장에 따라 소장 학술지를 복사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 보내주는 '복사본에 의한 학술지 제공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상호대차이기 보다는 해당 복사물의 이관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제시한 공정사용인 보관이나 연구행위로 적용받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 출판사가 자료를 판매할 때, 교내에서 열람만 가능한 자료, 교내에서 열람과 여러 장의 복사가 가능한 자료,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등을 이용하여 외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료, 전산화하여 CD에 담을 수 있는 자료, CD로만 외부서비스가 가능한 자료, 온라인으로 외부 서비스를 허용하는 자료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그 이용자

수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⁶⁾ 이러한 판매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 대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자료들은 교내열람용 수준의 자료로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의학도서관협회와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대차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학술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은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되나 대부분 회원에 한해 배포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학술지 등은 공개성 자료보다는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권을 갖는 자료이다.

한편, Ariel⁷⁾에 의한 학술지의 배포는 유료저작물의 배포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Ariel시스템은 미국 연구도서관협의회(RLG: the Research Libraries Group)에서 회원도서관간의 자료공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작권을 해결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의 송수신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미국 연구도서관협의회에서 CONTU의 규정에 준수하여 자체 해결하고 있어 해당 회원도서관간에 자유로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프로그램과 별개로 협의회 차원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⁸⁾에서 주관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의 디지털화 사업도 임의적으로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와 각 학회간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협의후 이루어져 저작권에 관련한 부분이 선결된 사업이다. 이에 대해 KORDIC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각 학회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 1) 논문에 대한 저작권 학회지 기재시 학회에 귀속
- 2) DB저작권 DB제작자에 귀속 (KORDIC)
- 3) DB서비스 데이터 및 DB저작권자에게 귀속 (학회/KORDIC 공동귀속); 사안별 협의요

6) 박일종, "현존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점과 미래환경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1996. p.407.

7) Ariel 프로그램: 미국 RLG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기반용 학술지공유전송시스템

- Ariel 시스템의 기본형태는 쌍방이 모두 Internet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일방에서 전송할 원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Internet을 통하여 상대 PC로 전송하면 상대 PC에서 프린터로 전송된 원문을 출력시키게 되는 것이다.

- 특징: 원문복사가 불필요하며, Internet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TIF 형태는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Docview를 이용해 볼 수 있다.

<http://wonjume1.yonsei.ac.kr/ywml/sangho/docview.htm>

8) <http://www.kordic.re.kr/~society/index1.htm> 2000년 1월 14일

따라서 국내외에서 발간된 자료 가운데 학술지의 경우는 해당 도서관에 소속된 이용자들을 위해 배포된 자료일뿐 외부이용자에게 복사물의 형태로 배포되는 것은 해당 학회나 기관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즉, 원저작자(예를 들면, 당해 학회 등)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복사물 배포 서비스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거론되며, 구체적인 판례나 고발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이나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다.⁹⁾ 즉, 국내 학술지의 경우는 KORDIC과 같은 기관에서 학회와의 규약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 자료(학술지 포함)를 인터넷을 통한 복사 서비스 제공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복사의 제한

문헌자료에 대한 대출은 물리적인 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관이 소장한 자료를 한 사람에게 대출했다는 것은 그 자료가 회수될 때까지 다른 이용자들은 대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는 이러한 물리적 제한점이 전혀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책자형 데이터의 경우는 복사행위시 원본의 파손과 복사본의 인쇄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사행위에 대해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를 복사하는 이용자 사이에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자료의 복제는 도서관 입장에서 재산적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인쇄질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복제용구가 기존의 물리적 형태의 자료보다 매우 높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의 복제행위를 보관과 연구에 한해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 소장중 자료를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공정이용측면에서 보거나 연구차원에서 개인의 사적 복제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⁰⁾ 참고로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사적 복제의 최대 양은 7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들의 전문서적, 논문의 복제, 회사 사무실에서 사원교육용 또는 자료용 복제는 사적 사용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¹⁾ 단, 복제시기와 복제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복제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해석이 유보된 상태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소장중인 A라는 자료가 특정 강의에 교재로 채택되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복사를 7부 이상했으나, 복사가 한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도서관이 7부를 복사한 것인지 혹은 수강생 각자가 한부씩 복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¹²⁾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복제물은 한 부에 한하며, 2부 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 등에서의 복사 제공은 공공적인 차원에서 저작권산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산권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복제물을 2부 이상 제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포되어 저작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판에서 구독할 수 없는 희귀한 자료의 손상이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복사본을 일반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판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 등의 예산 사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9) 1999년 11월 20일 전북대학교 창립20주년 기념식 세미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표

10) <http://cdcc.kcaf.or.kr/counsel.htm> 상담: 저작권의 제한

1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12. p.196. <http://cdcc.kcaf.or.kr/counsel.htm>

12) 대학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외국서적을 복사·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복사비용을 맡아도 되는가?

학생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은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특히 그 복제이용하는 서적이 전문적인 외국서적일 경우 국내에 있어서 서적의 수요자가 극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외국출판사의 허의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 세 번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① 다른 도서관 등에서 복제물의 제공요구가 있어야 하고, ② 요구하는 자료가 절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나 도서관 등이 예산 사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그리고 제공하는 복제물은 요구한 도서관 등에서 보존용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즉, 현재 도서관간 협약에 의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자료의 복사를 이용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의 논란에 적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한편, 94년 한국학도서관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도서관에서 자관이 소장한 문헌 복사 처리를 제외하고 연간 12,000건의 복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¹³⁾는 것은 적지 않은 복제가 의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사적 복제보다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서비스로서 도서관의 면책 규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도서관의 해결 방안

1) 제도적 해결방안

국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차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도서관 업무이다. 또한, 모든 도서관이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기보다는 저작권법 자체가 천고법이기 때문에 형법과 같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판례에 근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측에서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도 적극적인 저작권 대처에 미흡한 이유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은 장서수와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호대차제도를 통해 도서관의 위상과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서관들이 저작권법제도하에서 활발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디지털 도서관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용의 유보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법 제정부터 시행에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은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나 혹은 문예저작권협회와 같은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저작권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든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단위로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저작권자와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거래규칙제정 방안: 도서관과 같은 공익기관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경우 원저작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규칙에 의거한 계약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 및 강제이용허락제도 도입: 현실적으로 모든 도서관들이 소장자료에 대한 저작권자와 개별 협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더욱더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이의 수용이라는 양면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구입하는 모든 자료들을 복사를 비롯한 외부이용(상호대차 등)이 허락된 자료를 구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기존 소장자료와 예산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복사를 방지하거나 혹은 불법복제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작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여 복제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13) 최홍식. 의학도서관을 위한 상호대차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6. p.20.

있다.

· 전자저작물의 암호화: 저작물への 접근통제장치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패킷기호화와 목적코드화 방법이 있다.

· 디지털 서명: 복제 이용 및 변경확인 장치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자문신(stagneography), 이용확인장치 등이 있다.

· 비트의 노이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장치를 의미하여 복제시 현상도를 조정한다.

이외에도 슈링크 랩 라이선스와 같이 이용자의 양식에 맡기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대해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개별계약도 아닌 약관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는 의문이다.¹⁴⁾ 또한,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한 해결방안적 성격이 강하며 도서관과 저작권자와의 책자형 저작물의 디지털화나 불법복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단,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으로는 전자문신과 워터마크와 같은 기술로 구축 저작물의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관리와 모든 권한은 일부를 공공의 영역에 두되 이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실을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양자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⁵⁾

3) 도서관의 대응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저작권법을 비롯한 각종 정보보호정책으로부터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사회가 전폭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의 출현과 디지털 데이터로만 구성된 디지털 도서관의 출현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사서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관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도서관의 봉사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저작권침해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도서관에서

의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① 복제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 ② 비영리, 비상업적인 봉사행위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익이 창출되어선 안된다.
- ③ 복제행위가 단독, 단수로 그쳐야 한다.
- ④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⑤ 저작물의 변형시에는 관련 저작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상의 것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변환에 대한 판단이며, 이러한 원칙에 준거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한 경우에 대한 도서관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디지털화에 따른 경비는 원저작물의 창작에 소요된 경제적·정신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디지털 장서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며, 디지털화 대상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장서구축 비용에 대한 도서관측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도서관보다도 많은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금전적 권리보다는 정보봉사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로운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법은 사례별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유사판례에 대한 도서관의 자체해석보다는 정식조정단체나 판례에 근거한 해석이 있기까지는 자의적인 복제나 디지털자료구축, 상호대차 서비스의 확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관련된 판례나 조정사례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나 추측성 해설에 근거한 대처방안은 향후 도서관과 저작권자와의 본격적인 조정시에 보상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허락받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

1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 12. p.198.

1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 12. p.258.

문과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용 허락을 받은 논문은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도서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디지털 도서관내 서비스(관내서비스)로 봉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¹⁶⁾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Clearing house와 같이 저작권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문예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문예저작권협회에서 Clearing hous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Clearing house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책자형 저작물을 포함하여 디지털 저작물 등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적극적인 도서관 봉사가 가능하도록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대표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¹⁷⁾

결 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은 예산과 자료의 부족으로 이용자를 위한 제한적이며 수동적인 정보서비스에서 능동적이고 열려있는 정보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이 갖고 있는 무제한성과 복제물과 원본과의 동일성 등과 같은 특징 때문에 저작자에 대한 권리침해요소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과거의 단순 복제와 제한된 복제서비스를 인정받고 권리침해에 따른 소송과 고발과 같은 외부제약에 무관한 단체로 인정받았으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오히려 불법복제를 위한 온상으로 지적될 여지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시대의 양면성에서 도서관이 보다 정보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도서관은 공공성과 비영리성 기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제한된 복제행위에 대해 '저작권제한'에 관한 면책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2) 디지털 자료의 복제는 자료 특성상 원본과의 동일성, 전파의 신속성 등으로 기존 도서관의 복제와는 달리 저작자의 권리침해규모가 매우 방대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에서의 복제행위에 대한 기존의 면책규정에 새로운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실제적으로 선진외국에서는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집중관리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3) 도서관들의 기존 상호대차서비스는 소장자료의 복사와 우편을 통한 자료교환의 수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공유로 변모하고 있다.

4)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정보교환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교환용 프로그램일 뿐이며 저작권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복사대상이 되는 자료가 외부교환 수준의 자료 혹은 디지털화를 허락받은 자료가 아닐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5) 외국의 경우에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위해 협의회차원에서 저작권문제를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기관(도서관협회)이 저작권 집중관리제를 시행하여 디지털 도서관 정보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디지털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저작권자와 도서관간 쌍방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연적이며, 전자문신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을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필요하다.

7) 저작권법은 판례와 조정과 같은 사례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된 사례가 아직 없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적 시각은 해석수준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은 향후 도서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협회와 같은 대표기관에서 디지털 복제와 자유로운 봉사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과

16) 이은숙,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8. p.53~54.

17) 쓰리소프트,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동회사, 보고서, 1997. 9. pp.236~237.

지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Levering M. "The Library and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A periodic Report from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No.3. 1995.
- 2) 김정란.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문제에 관한 소고", 국립대학도서관보. 15권. pp.69-82.
- 3) 남영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권1호. pp.161-181.
-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설계에 관한 연구. 동도서관. 보고서. 1996. p. 12.
- 5) 서 휘.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5호. pp.540-543.
- 6) 쓰리소프트.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동회사. 보고서. 1997. p.9.
- 7) 이은숙.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8.
- 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동위원회. 1996. p.12.
- 9) 첨단학술정보센터. 전국대학 디지털도서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동센터. 보고서 1997. p.12.
- 10) 최홍식. 의학도서관을 위한 상호대차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6